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0
----------	-----

2019. 3. 15.(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9년 2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3월 11일

-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옥규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국제문화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안 제5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 (안 제8조)
-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타 시도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5개의 광역시도(광주, 대전, 세종, 경기도, 제주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나 도 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사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음.
- 충청북도에서는 자매도시인 중국 흑룡강성, 일본 야마나시현, 베트남 빈푹성과 문화, 체육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의 국제문화교류사업과 민간단체의 국제문화사업을 포함한 계획수립, 민간 전문가 육성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150호
의결 연월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발의자	이옥규 의원 등 7명
발의연월일	2019년 2월 26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이옥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
----------	-----

발의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발의자 : 이옥규,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연철흠, 정상교,
오영탁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 국제문화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안 제5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 (안 제8조)
-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입법예고 : 2019. 2. 1 ~ 2.20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 내 시·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궐위·사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협의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도 내 시·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①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